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82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 : 송옥주 • 이수진(비) • 윤미향

안호영 · 양이원영 · 김영주

김민철 • 윤준병 • 장철민

오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(피인정자)이 석면질병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수술 등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.

또한, 요양급여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하 도록 하고 있어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석면질병의 치료를 위 해 피인정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은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.

아울러,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을 법 시행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, 석면질병 특성상 잠복기(15년~40년)가 길고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쉽지 않으며,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해 유족들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.

한편,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및 피인정자 관리,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'석면피해구제시스템'을 구축·운영 중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,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을 완화하고,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며,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석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석면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).
- 나. 요양급여를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(안 제9조제5항).
- 다.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'5년'에서 '15년'으로 연장함(안 제12조제4항).
- 라. '석면피해구제시스템'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위한 기금 사용이 가능토록 함(안 제25조제8호 및 제47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전단 중 "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"을 "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거나, 석면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중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유증에 해당하는"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"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"을 "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"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"5년"을 "15년"으로 한다.

제2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5(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, 피인정자 관리, 조사·연구 등에 활 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	제7조(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	②
(이하 "피인정자"라 한다)이 자	
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	
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	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거나,
<u>망이 없다고 판단하는</u> 경우에는	석면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
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	중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	후유증에 해당하는
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절	
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	
용한다.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9조(요양급여) ① ~ ④ (생	제9조(요양급여) ① ~ ④ (현행과
략)	같음)
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제6	5
조에 따른 <u>석면피해인정을 신청</u>	<u>석면질병의 진단을</u>
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	<u>받은</u>
다.	<u>.</u>
제12조(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	제12조(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
의비) ① ~ ③ (생 략)	의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4
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	

비(이하 "특별유족조위금등"이라 한다)의 지급 신청은 이법 시행일부터,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날부터 각각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.

제2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 다.

1. ~ 7. (생략)

<신 설>

8. (생 략) <신 설>

<u>15년</u>	
제25조(기금의 용도)	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・운영에 필요한 경비
-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제47조의5(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・운영) ① 기술원은 석면 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 청자 관리, 피인정자 관리, 조사 •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・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 다.